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지연

전화 031-475-4290 / **팩스** 031-481-4555

보 도 자 료

2020. 11. 3.(화)

제 목 **집단 식중독 발생 안산 유치원 사건 수사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☑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1조 제2항 제3호)

※ 2020. 11. 3. **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**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◉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·보건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안동완)는 '20. 6.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 사건과 관련하여, **유치원 원장, 영양사, 조리사 등 3명**을 총 97명의 유치원 원생 등에 대한 식중독 야기(업무상과실치상, 식품위생법위반) 및 역학조사 방해(위계공무집행방해,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 등 혐의로 **구속 기소**하고, **유치원 교사, 식자재 납품업자, 육류 납품업자 등 3명**을 역학조사 방해(위계공무집행방해,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 혐의로 **불구속 기소**하였음

◉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('20. 1.~4.) 위 유치원에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급식제공을 하여 온 사실, 영양사가 주중 1시간 30분 가량만 근무하고 식단 작성, 식자재 검수, 배식관리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됨

◉ **집단 식중독 발생의 주된 원인**은 **육류 등 식자재의 냉동·냉장시설의 이상, 식자재 검수 등 관리부실**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, 이에 대하여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,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, 냉장·냉장시설 관리규정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함

Ⅰ 피고인들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들

- A○○(63세, 유치원 원장), 구속 기소
- B○○(46세, 영양사), 구속 기소
- C○○(48세, 조리사), 구속 기소
- D○○(32세, 유치원 교사), 불구속 기소
- E○○(57세, 식자재 납품업자), 불구속 기소
- F○○(48세, 육류 납품업자), 불구속 기소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, B○○, C○○은 공모하여,

  1) ’20. 6.경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업무상 과실로 총 97명의 유치원 원아들이 식중독 등에 감염되게 하고 **【업무상과실치상, 식품위생법위반】**

  2) ’20. 6. 16.경 상록구청 공무원들의 역학조사시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제조한 보존식을 제출 **【위계공무집행방해,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】**

- B○○는 ’16. 9.경부터 ’20. 6.경까지 영양사로서 식단 작성, 식자재 검수, 배식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고, A○○은 자신이 고용한 B○○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치함 **【식품위생법위반】**

- A○○은 ’20. 1.~4.경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로서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조리보조사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하게 함 **【식품위생법위반】**

- A○○, D○○, E○○는 공모하여, ’20. 6.경 공무원들의 역학조사시 납품일자를 허위기재한 식재료구매검수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 **【위계공무집행방해,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】**

- A○○, D○○, E○○, F○○는 공모하여, ’20. 6.경 공무원들의 역학조사시 납품일자를 허위기재한 육류 거래명세표 및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제출 **【위계공무집행방해,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】**

Ⅱ 수사 경과

○ ’20. 10. 16. 경찰, 사건 송치

○ ’20. 10. 16. ~ 10. 30. 피고인들 조사,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,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및 통화내역 등 확인

※ 검찰 수사 중 영양사인 B○○ 직무위반, 조리사 미고용 급식시설 운영, 허위 육류 거래명세서 등 제출시 D○○ 가담 사실 등 추가 확인하여 인지함

○ ’20. 11. 3. 피고인 A○○ 등 3명 구속 기소, 피고인 D○○ 등 3명 불구속 기소

Ⅲ 참고 사항

○ **식중독 집단발병의 원인**은 **유치원이 제공한 급식**으로 추정

- 추정원인병원체는 장출혈성대장균 O-157균으로, 피해자들의 대장균 유전자지문 분석결과 92.3% 일치하고, 피해자들이 공통되게 노출된 장소와 음식이 유치원 급식이 유일하며, ’20. 1.~7.경 안산 지역 전체에서 동일한 감염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고, 피해자들의 증상발생이 6. 13.~16. 사이에 집중되어 사람 간 감염가능성 역시 배제됨

- 다만, 피고인들의 보존식 폐기 등 고의적인 역학조사 방해행위로, 제공된 급식 중 어떤 특정한 음식에 의하여 감염되었는지는 불명

○ **해당 유치원**에서는 **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, 위생관리 소홀로 교차오염**의 위험이 있었으며, 식자재 보관 냉장고의 권한 사용기한(8년)이 경과하고 **냉각기능이 60% 이하인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**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

○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의 역학조사시 허위의 보존식과 날짜를 새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**역학조사를 적극 방해**한 사실도 확인됨

○ 또한, 검찰 수사 과정에서, ① 사건 발생 이전('20. 1.~4.) 위 유치원에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급식제공을 하여 온 사실, ② 영양사 B○○가 주중 1시간 30분 가량만 근무하고 식단 작성, 식자재 검수, 배식관리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, ③ D○○가 허위 육류 거래명세서 등에 적극 가담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함

○ 본건과 같은 집단 식중독 발생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①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및 급식시설 전수점검 실시, ②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및 제재 강화, ③ 조리시설 내 CCTV 설치, ④ 냉동·냉장시설 관리규정 마련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함 ▨

※ 【별첨】 제도개선 건의(안) 요지

【별첨】

[제도개선 건의(안) 요지]

연번	항목	건의 요지
1	공동영양사 규정 폐지 및 급식시설 전수점검 실시	- 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영양사 규정에 따라 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어, 인접한 5개의 유치원이 1명의 영양사를 공동으로 고용하면서 영양사 1명이 주 1회씩 5개 유치원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 - 위와 같은 환경에서는 영양사가 매일 식단, 배식관리, 식자재 검수 등 위생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, 공동영양사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 - 이에 더하여, 비용절감을 위하여 영양사를 1~2시간 정도의 단시간만 형식적으로 근무시키거나 자격을 갖춘 영양사·조리사 없이 급식시설을 운영함에도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매년 급식시설 전수점검 등을 실시하여 제재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
2	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및 제재 강화	-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서는 제공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, 위반시 제재는 과태료 부과에 불과 - 보존식은 식중독 등 발생시 그 원인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, 소규모 유치원·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의무를 확대하고,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
3	조리시설 내 CCTV 설치의무 신설	-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CCTV 의무가 있으나, 유치원의 CCTV 설치의무가 없고,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실 등에 설치의무가 있을 뿐 조리실 내 CCTV 설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 - 부실한 위생관리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시 아동학대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조리실 내 CCTV 설치의무 부과 검토 필요
4	냉동·냉장시설 관리규정 마련	- 본건 집단 식중독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냉장고의 이상 문제는 유치원 설립 이후 한번도 그 기능이상이 점검되지 않았음을 확인 - 현재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동·냉장시설을 관리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, 그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점검규정 마련 필요